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망 이재상의 상속인 김유진
소유물건(2024타경7354)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주연중

감정평가서번호: MA25111801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轉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미래자산감정평가사사무소

(구분건물)감정평가표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인)
최상훈

감정평가액	일억구천육백만원정 (₩196,000,000.-)					
의뢰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법보좌관 주연중		감정평가 목적	법원경매		
제출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경매3계		기준가치	시장가치		
소유자 (대상업체명)	망 이재상의 상속인 김유진 (2024타경7354)		감정평가 조건	-		
목록표시 근거	귀 제시목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기타 참고사항	-		2025.12.18	2025.11.21 ~ 2025.12.18	2025.12.19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아파트	1개호 이	아파트 하	1개호 여	- 백	196,000,000
	합계					₩196,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 감정평가 개요

1. 감정평가의 목적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광주유통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02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제102동 제9층 제901호』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경매(2024타경7354)를 위한 감정평가임.

2. 감정평가의 근거

본건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 및 감정평가 제이론에 의거 감정평가 하였음.

3. 실지조사 실시기간, 기준시점 및 기준가치

1)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기준시점

본건의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년 11월 21일 ~ 2025년 12월 18일로 대상물건의 이용상황 및 가격수준 등을 확인하였으며,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년 12월 18일임.

2) 기준가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감정평가 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감정평가의 조건

해당사항 없음.

5. 대상물건의 개요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02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제102동			사용승인 일자	2005.08.30		
주용도	아파트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전체층수	지상13층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구 분		전유면적 (㎡)	공용면적 (㎡)	분양면적 (㎡)	전용률 (%)	대지권 (㎡)	공부상 용도
기호	해당 층·호수						
1	제9층 제901호	84.99	22.536172	107.526172	79.04	63.87	아파트

※공용면적은 집합건축물대장상 주공용부분 면적을 합산하여 기재함.

6. 그 밖의 사항

가. 본건의 소재지, 지번, 면적 및 이용상황 등은 귀 제시목록 및 제반 공부자료에 의거함.

나. 본건 집합건물의 위치확인은 집합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현황도 및 현 점유사용부분 등으로 확인하였음.

다. 본건은 2024년 03월경에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시설, 설비 등에 화재피해 및 인명피해(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며,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내부시설 및 설비 등은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 및 수도, 난방설비 등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 경매 참여시 화재피해에 따른 내부설비 수리 및 인명피해(사망사고) 등에 유의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결정

1) 본 평가에서 구분건물은 제반 입지조건, 주위환경, 층별·위치별 효용도와 건물의 구조, 용재, 부대설비, 시공정도, 현상 및 인근지역 내 유사 구분건물의 거래사례, 평가선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에 의거 상기 방법에 의해 산출한 시산가액과 다른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나, 본건이 비수익용 부동산이라는 점 및 전유부분(건물)과 대지권이 일체로 효용을 발생시키는 대상물건의 특성 등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주된 방법에 의한 시산가액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의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성을 지니므로 건물과 토지가 일체로 거래되어 토지, 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평가목적상 귀 법원의 요청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토지·건물 배분비율표’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산하 한국부동산연구원 발행)에 근거한 배분비율을 기준으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으로 배분하여 표기하였는 바, 귀 경매업무 진행시 참고바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2. 감정평가액 산출과정

1) 인근지역 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KAIS 감정평가정보체계 등)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거래시점	대지권 (㎡)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비고
				사용승인일				
a	진우리 1002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10*동 11층 110*호	84.99	2025.06.26	63.87	193,000,000	2,270,855	-
				2005.08.30				
b	진우리 1002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10*동 13층 130*호	84.99	2025.07.04	63.87	188,000,000	2,212,025	-
				2005.08.30				
c	진우리 1002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10*동 11층 110*호	84.99	2025.10.13	63.87	200,000,000	2,353,218	-
				2005.08.30				

2) 인근지역 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평가 목적	기준시점	평가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용승인일		
#a	진우리 1002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10*동 13층 130*호	84.99	63.87	경매	2024.07.01	205,000,000	2,412,048
						2005.08.30		
#b	진우리 1002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10*동 1층 10*호	84.99	63.87	공매	2024.05.23	193,000,000	2,270,855
						2005.08.30		

3)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검토

인근지역 내 유사부동산 가격수준
본건과 유사한 아파트 시세는 전유면적당 약 2,000,000원/㎡ ~ 2,500,000원/㎡ 내외 수준임. (층별·위치별 효용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인근지역 최근1년 경매통계

(출처: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구 분	용 도	경기도 광주시	
		매각율(%)	매각가율(%)
최근 1년 평균	아파트	42.5	84.1

5) 감정평가액의 산출 및 결정

(1) 적용사례의 선정

인근 시세수준을 적정히 반영하고 있고 본건과 층별, 위치별, 평형별 효용이 유사하며 건물의 구조와 설비, 관리상태 및 입지조건, 주변환경 등 제반 가격형성요인에서 비교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례(a)를 선정함.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거래시점	거래금액 (원)	전유면적당 단가(원/㎡)
					사용승인일		
a	진우리 1002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10*동 11층 110*호	84.99	63.87	2025.06.26	193,000,000	2,270,855
					2005.08.30		

(2)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감정평가에 있어서 비교사례로 선정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격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치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기 선정된 거래사례는 특별한 사정의 개입 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않음(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3) 시점수정

① 시점수정 기준

ㄱ. 시점수정이란 감정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거래사례의 거래시점과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이 시간적으로 불일치하여 가치수준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거래가액을 기준시점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임.

ㄴ. 사례는 아파트로서 유형적으로 유사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월간동향)의 지역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활용하여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해당 월 가격지수가 미고시된 경우 직전 월의 가격지수를 적용하였음.

② 시점수정치 내용

지 역	시점수정치	시점수정치 산정
경기도 광주시 (2025.06.26 ~ 2025.12.18)	1.01300	101.3 / 100.0 ≒ 1.01300

※ 거래시점 : 2025.06.26, 2025년 05월 지수를 적용함

※ 기준시점 : 2025.12.18, 2025년 11월 지수를 적용함

2025.06.26 매매 가격지수 (적용: 2025년 05월) : 100.0

2025.12.18 매매 가격지수 (적용: 2025년 11월) : 101.3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4) 가치형성요인 비교

구 분	조 건	격차율(본건/사례)	비 고
외부요인	대중교통의 편의성, 교육시설 등의 배치, 도심지 및 상업, 업무시설과의 접근성, 차량이용의 편리성,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배치, 자연환경(조망, 풍치, 경관 등)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건물요인 (내부요인)	시공업체의 브랜드, 단지내 총세대수 및 최고층수, 건물의 구조 및 마감상태, 경과연수에 따른 노후도, 단지내면적구성 (대형, 중형, 소형), 단지내 통로구조 (복도식/계단식)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개별요인 (호별요인)	층별효용, 향별효용,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전유부분의 면적 및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평면방식(베이), 간선도로 및 철도 등에 의한 소음 등	1.00	대체로 유사함
기타요인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00	대체로 유사함
누 계 치		1.000	

(5)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 산출

기호	거래사례 단가(원/㎡)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형성 요인비교	산정단가 (원/㎡)	전유면적 (㎡)	산정금액 (원)	비준가액 (원)
1	2,270,855	1.000	1.01300	1.000	2,300,376	84.99	195,508,956	196,000,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 의견

III. 감정평가액 결정 의견 및 결정 내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정평가 실무기준」 등 감정평가 관련 제 법령에 근거하여 비교방식으로 감정평가하되,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거래사례 및 평가선례와 대상 부동산의 제반 특성, 최근 부동산 가치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적정하게 최종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기호	소재지	건물명 및 동·호수	전유면적 (㎡)	대지권 (㎡)	감정평가액 (원)
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02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제102동 제9층 제901호	84.99	63.87	196,000,000
합 계					₩196,000,000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정평가액	비 고
					공 부	사 정		
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02 광주근형 심포니 아파트 제102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13층				
	[도로명주소]			1층	659.71			
				2층	652.94			
				3층 ~ 4층 각	652.95			
				5층 ~ 13층 각	638.1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도척로 404-6							
	1. 동소	1002	대	계획관리지역	25,012.1			
				(내)				
				철근콘크리트구조 제9층 제901호	84.99	84.99	196,000,000	비준가액 공용면적포함
				1 소유권대지권	63.87	63.87		
				----- 25,012.1				
						토지·건물 토 지 : 건 물 :	배분내역 98,000,000 98,000,000	
	합 계						₩196,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소재 '광주유통단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근린생활시설, 소규모 공장 및 창고, 아파트,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임.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임.

(3) 건물의 구조

2005년 08월 30일 사용승인을 득한 철근콘크리트구조 경량철골경사지붕 지상13층 건물 내 제9층 제901호로서,
외벽: 몰탈위 페인트 마감 등,
내벽: 벽지도배, 타일붙임 등,
창호: 샷시 창호 등임.

(4) 이용상태

아파트로 이용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후첨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참조바람.

(5) 설비내역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배수설비,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갖추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부정형 토지로서, 공동주택(아파트) 건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단지내 내부도로를 통해 외부 공도와 연계되어 있음.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계획관리), 주거개발진흥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 세부수립내용은 도시계획과에 별도 확인요),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물환경보전법>,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 특별대책지역<환경정책기본법>,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25.8.26.~26.8.25./외국인 등(외국법인,외국단체 포함)/대상용도: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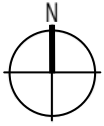
(9) 공부와의 차이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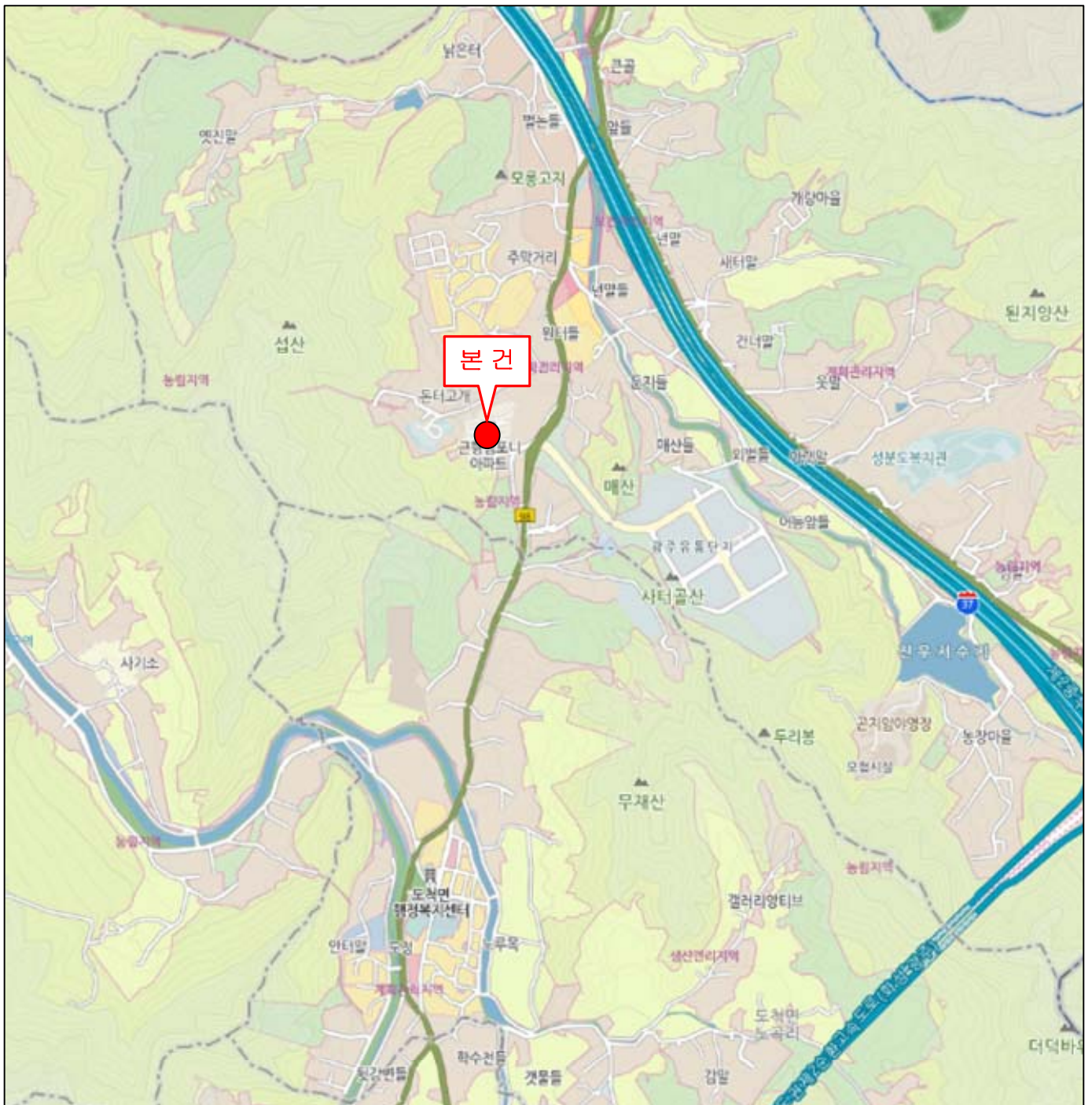
- 1) 임대관계 : 미상임.
- 2) 기타 : 본건은 2024년 03월경에 화재가 발생하여 내부시설, 설비 등에 화재피해 및 인명피해(사망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탐문조사되었으며, 기준시점 현재 아파트 화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아 내부시설 및 설비 등은 수리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전기 및 수도, 난방설비 등은 육안으로 확인이 어려운 바, 경매 참여시 화재피해에 따른 내부설비 수리 및 인명피해(사망사고) 등에 유의하시어 참여하시기 바람.

광역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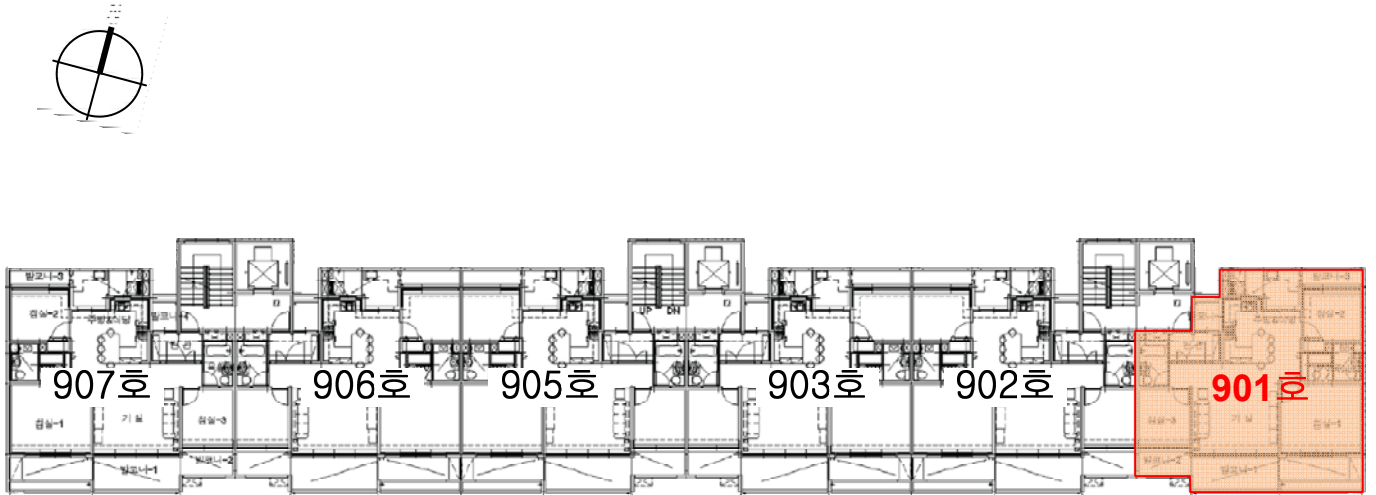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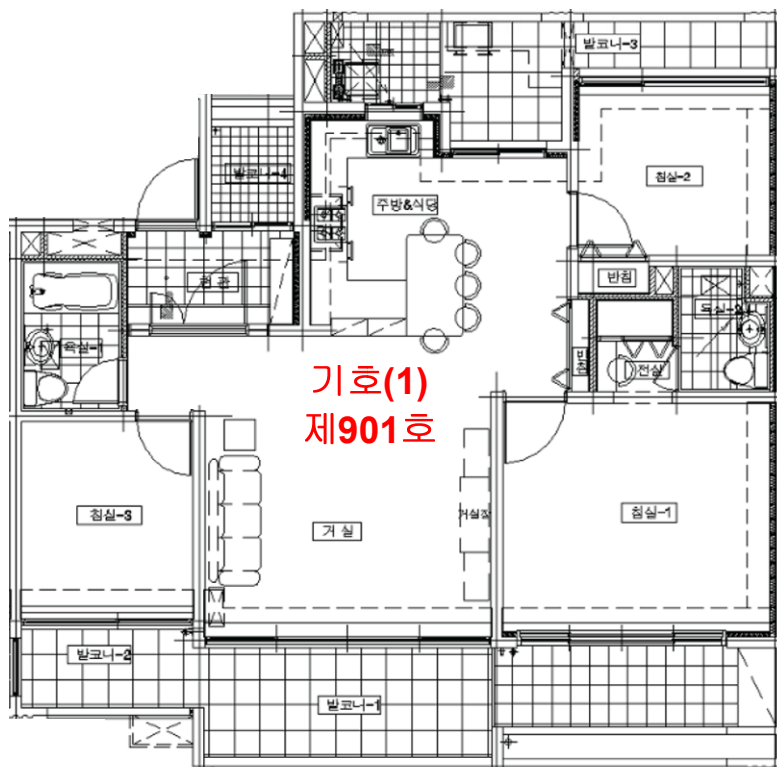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 1002
광주근형심포니아파트 제102동 제9층 제901호



호별배치도 및 내부구조도



< 제102동 제9층 호별배치도 >



< 제901호 내부구조도 >

※내부구조 및 이용상황 등은 집합건축물대장상 건축물현황도 등에 의거하였으며,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경매참여시 참고바람.





1









